

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기금관리부서의 조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상치되는 부분의 정비,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기금운용관은 기존의 총무국장에서 건설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방재담당으로 조정 (안 제5조)
-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(안 제8조)
-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조정 (안 제9조)
- 기금결산서의 의회 제출기한 및 기금결산서에 첨부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(안 제9조)

□ 검토사항

행정기구의 개편으로 기금관리부서의 조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, 조문체계 등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